

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1. 5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은 금회 1회로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유사한 사안의 선례를 방지코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
 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
 - 제2조(유효기간) 제23조, 제24조의 규정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3. 참고사항

- 「도로명주소법」

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3조, 제24조의 규정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안	수정안
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유효기간) 제23조, 제24조의 규정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</u>

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앞에 “제8장 도로명주소의 고지”를 삽입한다.

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3조 및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고지방법)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「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위촉·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24조(실비변상)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3조, 제24조의 규정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.